

<별지 제7호 서식> <신설 2021.2.25.>

작 성 자 :	(직 위)
전화번호 :	

약관 제정(변경)보고

문서번호

발신일자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
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5조 제1항 및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41조 제2항, 제4항에 의거하여 ○○약관의 제정(변경)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붙 임 : 1. 약관 제정(변경) 보고서
2. 자체심사표

○ ○ ○ ○ 대표이사 (인)

(붙임1)

약관제정(변경)보고서

1. 약관(상품)명 :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
4. 신구조문 대비표(변경의 경우) :
5. 시행(예정)일자(변경의 경우 서비스 개시일도 병기) :
6. 이용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(변경의 경우) :
7. 사후보고 근거 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보고된 동일·유사 약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) :
8. 약관 본문 (전체) :
9. 자체심사표상 특이사항 :
10. 최근 5년간 약관의 변경이력

약관(상품)명	제정·변경일	변경내용 요약
11.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 변경 여부 :
12. 기타 참고사항 :

(붙임2)

자체심사표(점검일자 : . . .)

약관(상품)명 :
확인자 : (직위) (성명) (서명 또는 인)
작성자 : (직위) (성명) (서명 또는 인) (전화번호)

점검항목	점검결과
1. 형식적 요건 점검	
①약관 제정·변경 보고 서식을 준수하였는가	
②약관 보고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	
③첨부서류는 빠짐이 없는가	
④법규상 사전보고(사후보고) 대상에 해당하는가	
2. 실질적 요건 점검	
①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	
②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없는가	
③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	
④이용자의 해제권 및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	
⑤회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·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·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가	
⑥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·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는가	
⑦이용자의 항변권, 철회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	
⑧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케 하는 조항은 없는가	
⑨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	
⑩회사와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가	
⑪그외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가	
⑫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약관의 자의적 해석 및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가	
⑬계약조건 등 설명·표시의무가 필요한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	
⑭특정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	
⑮이용자와 회사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 조항이 민사소송법 규정 등과 달리 이용자에게 불리하지는 않는가	
⑯법규상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	
⑰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	